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봉양순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2324호
- 다. 발의일자 : 2021.04.02
- 라. 회부일자 : 2021.04.06

2. 제 안 사 유

- 현재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도물을 마시는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20%) 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임관리를 원하는 기관에 한해서는 수도요금 감면 대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음수대를 별도 관리해 주고 있음.

2020년말 기준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임관리를 받고 있는 기관은 약 43% 수준에 달하고 있는 바, 수도요금 감면 대신 위임관리로 일원화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음수대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도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일부 수도요금 감면 조항의 각 호가 일부 삭제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현행화 할 필요성이 있음.

3. 주 요 내 용

- 가.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함 (안 제31조제1항제6호)
- 나.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정비함 (안 제31조제1항)

4. 참 고 사 항

- 가. 관련 법령 :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음수대 설치 학교 등의 수도요금 감면 규정 삭제(안 제31조제1항제6호)

-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등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는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6년 도입 이후 2021년 3월말 기준 1,301개소에 20,550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음.

<학교 아리수음수대 설치 현황('21. 3월말 기준)>

(단위: 개교)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설치대상	1,363	606	387	320	50
설치학교 (설치대수)	1,301 (20,550)	581 (8,407)	381 (6,649)	299 (5,136)	40 (358)
미설치학교	62	25	6	21	10

- 또한, 학교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음용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20%) 규정을 2008년 9월에 마련하였고, 2015년 7월에는 감면 대상을 확대¹⁾하였음.
- 2016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용역 업체와 계약을 통해 학교 음수대를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과 국공립 유치원(「유아교육법」 제7조)

위임 관리해 주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²⁾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학교 음수대의 자체관리 한계를 인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해당 조례 개정 이후 학교 음수대 자체관리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2020년말 기준) 자체관리 비율은 58%(754건)에 달하고 있고 특히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도 해당 학교와 상수도사업본부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음수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상수도사업 본부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 음수대 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 위임 관리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조례 개정으로 음수대 관리 일원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학교 아리수음수대 관리 현황>

(단위: 개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273	1,290	1,299	1,301
학교관리	자체관리	835	820	816	754
	용역관리	170	122	115	110
본부관리(위임)		268	348	368	437

2) 수도요금 감면규정 정비 (안 제31조제1항)

-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³⁾되거나 삭제된 경우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조례를 알기 쉽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3)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